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목 차>

1.자동차의 운행제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김민지
	담당부서 (과)	자율주행정책과		직급	행정서기
	국장	김홍목		연락처	044-201-3934
	과장	임월시		이메일	jijongkr@mail.g o.kr

2025. 02. 1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동차의 운행제한											
	2.규제조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조											
	3.위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2.21~2025.04.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자동차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해 제작사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4.2.13. 개정, ‘25.8.14.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심각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을 위하여 개정 추진											
	7.규제내용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자동차 운행제한 사유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차량소유주</td><td>다수</td></tr><tr><td>이해관계자</td><td>자동차 제작자 등</td><td>다수</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차량소유주	다수	이해관계자	자동차 제작자 등	다수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차량소유주	다수										
이해관계자	자동차 제작자 등	다수											
9.규제목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심각한 사이버 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의 안전 및 공중의 안전 확보가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table><tr><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r><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table>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정성분석 * 자동차 운행제한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행제한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 등, 여러 변수에 대한 소요 비용을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성분석으로 대체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미해당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자동차의 운행제한) <u>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차량 관련 해킹위협 연평균 99.2% 증가*(Upstream, GLOBAL AUTOMOTIVE CYBERSECURITY REPORT)

* 19년 24개, '20년 33개, '21년 139개, '22년 151개, '23년 378개

-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은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피해방지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운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 규정*에 따라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극심한 교통체증 예방 또는 해소, 차량의 특정 결함에 따른 반복적인 화재사고가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운행 제한이 가능하며,
-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은 기존의 제한사유와 비교하여 그 위협성과 예측되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심각한 사이버 공격·위협이 자동차의 운행 안전 등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

* (자동차관리법 제2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극심한 교통체증 예방 또는 해소 등 일정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내외 대규모 및 소규모 제작사	제작사 의견수렴 회의 ('24.4월 1회, 5월 2회)	의견 없음	-

3. 규제목표

-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이 발생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행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전시·사변, 교통체증, 화재위험 등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 가능함
- 사이버 공격·위협은 교통체증·화재위험을 넘어 전시·사변과 같은 수준의 위해 및 인명 피해까지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위한 목적과 운행 제한이라는 수단은 비례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몰 설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사항 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전시 사변 대처, 교통체증 해소, 화재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
-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운행 안전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운행 제한이 가능한 사유로 사이버 공격·위협 의 경우가 추가되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 경찰청장과의 협의 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면 되는 행정적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자동차의 운행 제한은 이미 운영 중인 제도이며, 행정력을 활용한 시행이 이루어질 것이어서 그 집행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유사시 행정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써 별도의 재정 투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24.2)
-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24.3~)

2. 향후 평가계획

-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 및 피해 현황 파악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검토 예정

3. 종합결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심각한 사이버 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의 안전 및 공중의 안전 확보 필요